

의안번호	2219617
의 퇴 인	서천호의원
회 답 일	2026. 9. 1.
추계번호	26B334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촌계장에 대하여 업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50억 3,600만원(연평균 90억 700만원)으로 추계됨
- (국 비) 5년간 총 225억 1,800만원(연평균 45억 400만원)
 - (지방비) 5년간 총 225억 1,800만원(연평균 45억 400만원)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어촌계장 업무수당 지급 (안 제15조의2 신설)	5,004	10,008	10,008	10,008	10,008	45,036	9,007
국비(50%)	2,502	5,004	5,004	5,004	5,004	22,518	4,504
지방비(50%)	2,502	5,004	5,004	5,004	5,004	22,518	4,504

주: 1. 어촌계장 수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2. 1인당 연간 업무수당 지급단가는 현행 통장·이장 기본수당(월 40만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3. 추계기간 첫해인 2027년은 개정안 시행일 및 사업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6개월분)부터 업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4. 분담률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5조의2 (어촌계장)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촌계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어촌계장에게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5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15조의2(어촌계장) 신설	○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촌계장에게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비 및 그 밖의 필요 경비는 지급 기준, 업무 수당 외에 추가 지급 여부 등을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수당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본 추계에서는 전국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업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함
 - 현재 일부 지구별수협에서 어촌계장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어촌계장 업무수당은 지구별수협의 수당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어촌계장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이때, 현재 지구별수협에서 지급 중인 어촌계장 수당은 비용추계 결과에서 차감하지 않음
 - 개정안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어촌계장의 업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현재 일부 지구별수협에서 지급 중인 어촌계장 수당¹⁾의 지속 여부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 다만, 추계기간 첫해인 2027년은 개정안 시행일 및 사업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6개월분)부터 업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1) [참고자료 2] 지구별수협의 2025년 어촌계장 수당 지급 현황 참고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어촌계장 업무수당 지급(안 제15조의2 신설)

□ 어촌계는 현행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의 조합원이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조직하는 자치단체

- (목적)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 도모
- (현황) 지구별수협 70개소²⁾에 소속된 어촌계는 2,085개소(2025년말 기준), 계원 수는 107,321명(2024년말 기준)

※ [참고자료 1] 지역별 어촌계 현황 참고

[표 2] 어촌계 현황: 2019~2025년

(각 연도말 기준, 단위: 개소,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어촌계 수	2,039	2,045	2,044	2,049	2,067	2,077	2,085
계원 수	124,462	121,989	108,754	109,483	108,127	107,321	—

주: 1. 계원 수는 어촌계원과 준어촌계원을 합산한 숫자
 2.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6 어촌계현황조사」는 현재 조사 진행 중으로 2026년 10월에 공표 예정
 자료: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2025 어촌계현황조사」, 2025.10., 53~55쪽

□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촌계장에게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2) 2026년 6월 기준, 지구별수협은 70개소

<수산업협동조합 현황>

(2026년 6월 말 기준, 단위: 개소, 명)

조합 분류		조합 수	조합원 수	비고
수산업 협동조합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70	143,456	경인, 인천, 부산 등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19	4,246	근해안강망, 근해유망 등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2	158	통조림가공, 냉동냉장 등
	합계	91	147,860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체 지구별수협 70개소 중 어촌계장 수당을 지급하는 지구별수협은 57개소인 것으로 파악됨
 - 해양수산부고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³⁾는 어촌계장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지구별수협은 소속 어촌계장에 대하여 수당 지급중
- ※ [참고자료 2] 지구별수협의 2025년 어촌계장 수당 지급 현황 참고

□ 본 추계는 전국 통장·이장 수당 지급 사례를 참고하여 어촌계장 업무수당 지급액을 추계함

- (연간 지급인원) 매년 2,085명 ('25년말 전국 어촌계 수 기준)
 - 이때, 어촌계장 수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1인당 연간 지급단가) 연간 480만원 (=월 40만원×12월)
 - 다만, 추계기간 첫해인 2027년은 개정안 시행일 및 사업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6개월분)부터 업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⁴⁾에 따라 통장·이장에게 지급되는 기본수당 40만원 준용
 - 이때, 1인당 연간 지급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분담률) 국비 50%, 지방비 50%
 - 개정안은 국비 및 지방비의 분담률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비 및 지방비 분담률은 각각 50%로 가정
 - 이때, 분담률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3)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해양수산부고시 제2025-230호)

제11조(어촌계) ① 이 조합의 조합원은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다.

⑤ 조합장은 어촌계의 계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449호)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① 경비성격: 통장·이장·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② 기준액
- 통·리장: 기본수당 월 4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 반장수당: 연 50,000원

□ 추계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촌계장에 대하여 업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50억 3,600만원으로 추계됨

- (국 비) 5년간 총 225억 1,800만원
- (지방비) 5년간 총 225억 1,800만원

[표 3] 어촌계장 업무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어촌계장 수(A, 명)	2,085	2,085	2,085	2,085	2,085	—
1인당 연간 업무수당 지급단가(B, 백만원/명)	2.4	4.8	4.8	4.8	4.8	—
어촌계장 업무수당 지급액(C=A×B, 백만원)	5,004	10,008	10,008	10,008	10,008	45,036
국비(C×50%)	2,502	5,004	5,004	5,004	5,004	22,518
지방비(C×50%)	2,502	5,004	5,004	5,004	5,004	22,518

- 주: 1. 어촌계장 수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2. 1인당 연간 업무수당 지급단가는 현행 통장·이장 기본수당(월 40만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3. 추계기간 첫해인 2027년은 개정안 시행일 및 사업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6개월분)부터 업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4. 분담률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대상자 수 및 지급단가 등의 변동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

[참고자료 1] 지역별 어촌계 현황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

<지역별 어촌계 현황: 2023~2025년>

(각 연도말 기준, 단위: 개소)

	2023	2024	2025
전국	2,067	2,077	2,085
부산광역시	51	51	51
인천광역시	60	60	59
울산광역시	29	29	29
경기도	54	56	57
강원도	74	74	74
충청남도	174	174	174
전라북도	65	65	65
전라남도	872	878	885
경상북도	147	147	147
경상남도	439	441	442
제주특별자치도	102	102	102

주: 각 연도 말 기준
 자료: 1.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 「어촌계 현황조사」
 2.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2025년도 어촌계 현황조사 결과보고」, 2025.10.
 3.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2024년도 어촌계 현황조사 결과보고」, 2024.10.

[참고자료 2] 2025년 지구별수협의 어촌계장 수당 지급 현황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2025년 지구별수협의 어촌계장 수당 지급 현황>

(2025.12. 기준)

지역명	지구별 조합명	어촌계 수 (개소)	계장수당			
			지급여부	1인당 지급금액(원/회)	연간 지급횟수(회)	연간 지급금액(원)
경인	경인북부	28	○	200,000	12	62,400,000
	경인서부	35	○	300,000	12	126,000,000
	인천	18	○	350,000	12	75,600,000
	경기	29	○	400,000	12	134,400,000
	영흥	6	○	150,000	12	10,800,000
강원	강원고성군	10	○	200,000	12	24,000,000
	동해시	6	○	200,000	12	14,400,000
	삼척	14	○	150,000	12	25,200,000
	삼척원덕	5	○	150,000	12	9,000,000
	속초시	5	○	300,000	12	18,000,000
	양양군	13	○	300,000	12	46,800,000
	강릉시	13	○	450,000	12	70,200,000
	죽왕	5	○	200,000	12	12,000,000
	대포	3	×			
충남	당진	8	○	150,000	12	14,160,000
	보령	30	○	600,000	4	72,000,000
	서산	57	○	150,000	12	100,800,000
	서천군	8	○	200,000	12	19,200,000
	서천서부	12	○	150,000	12	21,600,000
	태안남부	12	○	400,000	4	19,200,000
	안면도	44	×			
	대천서부	3	×			
전북	군산시	21	○	200,000	12	50,400,000
	김제	12	○	500,000	4	24,000,000
	부안	19	○	200,000	12	45,600,000
	고창군	13	○	1,800,000	2	46,800,000

지역명	지구별 조합명	어촌계 수 (개소)	계장수당			
			지급여부	1인당 지급금액(원/회)	연간 지급횟수(회)	연간 지급금액(원)
전남	강진군	30	×			
	목포	49	○	150,000	12	88,200,000
	신안군	72	×			
	영광군	16	○	250,000	12	48,000,000
	완도금일	129	○	100,000	12	154,800,000
	완도소안	63	○	200,000	12	151,200,000
	진도군	76	○	100,000	12	91,200,000
	해남군	73	○	200,000	4	43,400,000
	거문도	11	×			
	고흥군	160	○	100,000	12	192,000,000
	나로도	22	○	100,000	12	26,400,000
	여수	112	○	200,000	12	268,800,000
	장흥군	42	○	100,000	12	50,400,000
	전남동부	30	×			
	경주시	16	○	200,000	12	38,400,000
	강구	13	×			
경북	구룡포	32	×			
	울릉군	10	○	200,000	12	24,000,000
	울진죽변	17	○	250,000	12	51,000,000
	영덕북부	13	○	250,000	12	39,000,000
	포항	31	○	300,000	12	111,600,000
	울진후포	15	○	250,000	12	45,000,000
	거제	76	○	125,000	12	114,000,000
	경남고성군	29	○	160,000	12	55,680,000
경남 (울산 및 부경신항 포함)	마산	21	○	300,000	12	75,600,000
	삼천포	21	○	200,000	12	50,400,000
	울산	29	○	180,000	12	62,640,000
	부경신항	15	○	250,000	12	45,000,000
	진해	14	○	300,000	12	50,400,000
	통영	88	○	170,000	12	179,520,000
	하동군	26	○	150,000	12	46,800,000
	남해군	112	○	80,000	12	107,520,000
	육지	18	○	150,000	12	32,400,000
	사천	9	○	250,000	12	27,000,000
	사량	14	○	150,000	12	25,200,000
	창원서부	8	○	150,000	12	14,400,000

지역명	지구별 조합명	어촌계 수 (개소)	계장수당			
			지급여부	1인당 지급금액(원/회)	연간 지급횟수(회)	연간 지급금액(원)
부산	부산시	24	×			
	기장	18	○	200,000	12	43,200,000
제주	서귀포	19	○	500,000	12	114,000,000
	성산포	13	○	400,000	12	62,400,000
	제주시	34	○	300,000	12	122,400,000
	추자도	5	×			
	한림	18	×			
	모슬포	13	×			
	합계	2,085				3,694,520,000

주: 1.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어촌계장 수당 현황을 조사
 2. 어촌계장 공석으로 인해 어촌계장 수당을 일부 미지급한 사례가 있음(강릉시, 당진)
 3. 연도별 「어촌계 현황조사」에 따른 지역 구분과 상이할 수 있음(예: 울산광역시 및 부경신항은 경남에 포함, 경기와 인천은 경인으로 합산 등)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